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31 / 전송 731-6135

문서번호 기획 13130-107

시행일자 '95. 2. 18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

참조 의사담당관

서울시공고
 1995. 2. 18.
 제1995-
 54호

취급		시 장
보존		
기획관리실장	전결	73 9mm 1
기획담당관	[인]	법무담당관 [인]
의회협력계장	[인]	
기안	윤 양 모	협조

제목 부의안건 제출

1.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

가. 부의안건 제출내역 : 1 건

o 조 례 안 (1건)

-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

따로붙임 : 1) 의안 1건 서류 각 2 부.

2) 의안목록 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2 안)

수 신 : 공보1담당관

제 목 : 시의회 부의안건 시보게재 의뢰

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안건공고의 시보게재를 의뢰합니다.

따로붙임 : 공고문안 1부. 끝.

기 획 담 당 관

서울특별시
 공보1담당관
 1995. 2. 18.
 [인]

H 149

168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5- 호

서울1995.2.27제 50 호		
발당자	명제청사제명	일부담당관
141	fe	ge

시 의 회 부 의 안 건 공 고

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5년 2월 일

서 울 특 별 시 장

구 분	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조 례 안 (1 건)	1.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	투자 관리 담 당 관

150

14P